

## 일반사무 위·수탁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

본 일반사무 위·수탁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이하 “본 변경계약”)은 2021년 [9]월 [16]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위탁자 주식회사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5층(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수탁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수탁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4층(여의도동)

전문

위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2019년 11월 25일 위탁자의 업무 중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 등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일반사무 위·수탁계약」(이하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변경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최초 계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변경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최초 계약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변경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본 변경계약에서 어떠한 계약이나 서류를 지칭할 경우, 이는 변경, 수정, 보충, 대체된 계약이나 서류, 그에 부수하거나 수반되는 일체의 권리문서를 포함하며, 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규율하지 않는 한 본 변경계약에서 언급된 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 제 2 조 (보수의 변경)

- ① 최초 계약 제8조(보수) 제3항에 따라 최초 계약 제8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1항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결산기 별로 구별하여 해당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결산기 수수료는 180일에 대한 실제 업무수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이 초과될 경우 매 결산기 단위의 수수료와 6개월이 초과된 기간을 180일에 대한 실제 업무수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연간 보수	비고
제4기, 제5기, 제6기	금 팔천만원(₩80,000,000) {매 결산기별 금 사천만원(₩4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제7기 이후	금 일억이천만원(₩120,000,000) {매 결산기별 금 육천만원(₩6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본 변경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또는 부동산투자 회사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수는 수탁자의 업무범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제 3 조 (효력)

- ① 본 변경계약의 효력은 본 변경계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최초 계약 중 본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조항은 본 변경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② 본 변경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계약은 본 변경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 ③ 본 변경계약과 최초 계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변경계약이 우선한다.
- ④ 본 변경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최초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일체의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최초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개별약정 및 제

출서류에 최초 계약 또는 본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조항이 적용되거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 등의 해당 규정은 본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최초 계약 또는 내용을 적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 ⑤ 본 변경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최초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4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변경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일자에 각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본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 후, 각자 보관하기로 하였다.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5층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회사명 : 주식회사 엔에이치올·원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 박 영 희



수탁자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1 (여의도동)

회사명 :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 허 인 (인)

